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197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1978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3302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3가단54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김해시

판결 선고 2016. 7. 27.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330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9474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1. '토지의 표시' 순번 6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192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시도로 지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 등이 소실되었다는 점이나 위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 또는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거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의 고조부인 망 C은 1911. 8. 20. 김해시 N 전 30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②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26. 11. 29. 김해시 N 토지와 O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③ 피고는 1926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시도로 지정하여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김해시 Q, R, S, T, U, V, W, X, Y 토지 등도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날과 같은 날인 1926. 11. 29.에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된 도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 김해시 N 토지와 O 토지는 1936. 4. 24. 원고의 증조부인 망 B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39. 4. 10. Z에게 매도된 후 제3자들에게 전전 매도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처분되지 않고 있다가 2011. 6. 24.에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⑥ 망 C이나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부지로 사용된 때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80여년이 넘도록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를 무단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